

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여노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22년 11월 일
제출자 : 여노연, 도희재, 구교강, 김경호, 김종식, 장익봉, 이화숙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및 제30조와 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,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과 성주군 조직개편(안)에 따른 의정팀 신설과 담당에서 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당연직 간사 명칭 변경(안 제9조 4항)
- “의사담당로” → “의정팀장으로”

3. 조 례 안 : 불 임

4. 예고기간 : 2022. 11. 8. ~ 11. 14.

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4항 중 “간사는 의사담당로”를 “간사는 의정팀장으로”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원회의구성) ① ~ ③ (생략)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의사담당로</u> 한다.	제9조(위원회의구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의정팀장으로</u> ---.